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48
----------	-----

2025. 4. 30.(수)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종필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5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25년 4월 22일

-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종필 의원)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놀 권리에 대한 인식개선 및 연령에 적합한 놀이환경 기반 조성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안 제5조)
-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자문단 구성·운영 (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에서는 “아동은 놀고, 쉬고,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라고 명문화한 ‘아동의 놀이권, 즉, 여가·문화생활 향유의 권리’ 를 담고 있음
- 우리나라도 지난 1992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며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성장환경 조성 마련과 각종 법적, 제도적 지원을 마련할 의무를 갖게 되었음
- 그러나, 「2024 아동분야 주요통계」 가운데 아동 삶의 만족도는 26.1점으로 OECD 평균과 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참고 > 아동 삶의 만족도

(단위 : %)

구 분	OECD 평균	한국	스웨덴	미국
아동 삶의 만족도	33.8	26.1	32.6	28.5

※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2024 아동분야 주요통계」

- 이에,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놀 권리’ 를 보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지원 제도 마련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령에 적합하고 필요한 놀이환경의 기반 조성을 지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의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 (안 제2조)

- 본 조례안의 정의 규정을 통해 ‘아동’ 을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8세 미만 사람’ 으로 정하고, ‘아동의 놀 권리’ 도 국제연합(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에 아동의 놀이에 대해 인정하는 모든 권리로 규정하여 관련 시책 추진상 혼선 방지 등의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보여짐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본 조항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이 기반 조성 및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고 규정함
- 특히,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관련한 정책수립·시행 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어린이 놀이시설 등 놀이자원의 충북 도내 시·군 간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역별 아동의 놀이자원 접근성 확대를 위한 내용으로 필요한 규정으로 사료됨

-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도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3,042개로, 청주시 1,540개, 충주시 409개 등이며, 최소 지역은 보은군 56개로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놀이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으며, 지원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에 대해 명시하였음
특히,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에 포함,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음

○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내용과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 관련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6조)

- 본 조항에서는 도지사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 놀이 활동을 위한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등으로 명시함

또한,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지원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성 갖춘 기관·법인·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자문단 구성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아동 놀 권리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증진 사업,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자문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또한, 자문단의 별도 구성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충청북도 아동 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아동 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 복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 자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함

- 이 밖에도 안 제8조에서는 충청북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과 도가 주최하는 행사장 등에 아동들의 건전한 놀이 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본 조례안에서 정한 사항 외의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또한, 안 제9조에서는 놀 권리 증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교육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구축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특히, 심화되는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현상, 놀이유형이 한정되어 있는 영유아 키즈카페 선호 현상 및 이용 가능한 도내 놀이시설 환경의 격차 등 다양한 도내 놀이환경과 인식개선에 대한 해결 노력을 본격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본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본 조례안은 그 목적과 추진 사업을 위한 조례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안 입법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적합한 놀이환경 기반 조성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의 놀 권리”란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아동의 놀이에 대해 인정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놀이 기반 조성,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관련한 정책 수립·시행 시, 지

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제도의 개선 및 기반 조성
4. 자원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이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4.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놀 권리 증진 자문단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시설 및 도에서 주최하는 행사장 등에 아동의 건전한 놀이 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교육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 3. 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놀 권리에 대한 인식개선 및 연령에 적합한 놀이환경 기반 조성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

2. 비용 발생 요인

-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및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발생

3. 관련 조문

- 조례안 제5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
- 조례안 제8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어린이 날 행사 : 75,000천원('25~'29년)
-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 출전 : 85,000천원('25~'29년)
- 아동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 : 180,000천원('25~'29년)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 465,611천원('25~'29년)
- 아동복지시설 꿈나무 예술제 : 40,000천원('25~'29년)
- 지역아동센터 어깨동무 한마음 축제 : 124,300천원('25~'29년)
-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지원 : 233,868천원('25~'29년)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사업비	1,203,779	234,712	238,100	240,841	243,637	246,489

다. 재원 조달 방안

- 도 일반회계 편성
- 국고보조금(보건복지부 등) 매칭 지원 건의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234,712	238,100	240,841	243,637	246,489	1,203,779	
어린이날 행사 (도 1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 출전 (도 100%)	17,000	17,000	17,000	17,000	17,000	85,000	
아동자립지원 프로그램 (도 1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180,000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도 100%)	89,472	91,261	93,086	94,947	96,845	465,611	
아동복지시설 꿈나무 예술제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지역아동센터 어깨동무 한마음 축제	24,300	25,000	25,000	25,000	25,000	124,300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 체험실 지원	44,940	45,839	46,755	47,690	48,644	233,868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34,712	238,100	240,841	243,637	246,489	1,203,779
	지방세	234,712	238,100	240,841	243,637	246,489	1,203,779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시군비							
기 타 (민간 자부담 등)							